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21
----------	------

2023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3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23년 10월 23일
- 라. 상정일 :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수·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서울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 촉진 등 지역 간 상

생 교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과의 우호 교류 확대 및 지역 간 상생 교류사업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유연한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3) 주요 위탁사무
 - 지역 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지원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 업체 선정·관리 및 운영, 정기 기획전 기획·운영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
 - 지역 상생 교류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그 밖에 지역 상생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 4)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 개관일자 : '18.11.3.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지상 1층)
- 규모 : 413m²
-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 3년('24.1.1.~'26.12.31.)
- 6)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7) 소요예산 : 금 1,406백만원('23년 예산)
- 8) 심의결과 : 적정('23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서울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촉진을 통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도모, 시민의 농어촌 지역특산물 등 지역자원에 대한 체험·전시·홍보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1)에 따라 ‘지역상생교류사업’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본 동의안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3년 동안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추진경위]

- ('15.10. 8.)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5.12.22.) 지역상생교류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6. 5. 2.)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재)지역재단) 시행(~'18.12.31)
- ('17.12.29.) 가칭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운영계획 수립(시장 방침, 240호)
- ('18. 3.28.) 지역상생교류센터 새명칭 「상생상회」 시민공모 선정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8. 6.28.)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8. 9.5.)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8. 11.3.) 상생상회 정식 개관(市 직영체제 운영, ~ '18.12.31)
- ('18.12.28.)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슬로푸드문화원) 위·수탁 협약체결
※ 사업범위 : '16~'18년 민간위탁 사업 + 상생상회 관리·운영
- ('20. 6.12.)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 6.18.)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종합평가
- ('20. 7.1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적정”)
- ('20. 7.28.)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지역상생경제과, “적정”)
- ('20. 9.15.)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회승인
- ('20.12.16.)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슬로푸드문화원) 위·수탁 협약체결(재계약)
※ 민간위탁(재계약) 기간 : 2021. 1. 1.~2023.12.31.(3년)

나. 지역상생교류사업 추진 현황

- 2023년도 기준 주요사업은 상생상회 운영 등 4개 핵심사업과 홍보채널 운영 등 3개 기반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8천 8백만원임.

□ 2023년도 주요사업 현황 : 7개 사업, 288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천원)	성과목표
핵심 사업	상생상회 관리 및 운영	• 매장기획전 및 프로모션 운영 • 상생카페(1층 매장내) 등 프로그램 활성화	122,400	방문자 200천명
	상생상회 판매 확대	• 유관기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외부 장터 추진 • 제철 및 각종 피해농산물 지원	29,100	상설매장 매출액 21억원
	상생상회 입점 상품 관리	• 상품선정위원회 운영(분기별, 연4회) • 입점 업체 교육 2회	2,100	신규상품 입점 200개
	지역자원 체험 전시홍보 공간 운영	• 전시 2회(온라인 전시관 병행) • 서로맛남(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40,548	이용객 4,460명
	계			194,148

기 반 사 업	지역상생 교류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 홍보물 발간(자치구 소식지 등) 	40,640	홈페이지 방문객 94,500명 소식지 4회
	지역상생 가치 확산 및 시민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입소문, 교통매체 활용 홍보 등 	27,600	-
	지역상생 교류 및 체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in 서울 운영 - 우호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 행사, 장터 운영 • 상생로드 운영(지역상생 유관기관 견학) 	26,000	참여인원 400명 지역의날 10회
	계			94,240
총 계			288,388	

[상생상회 시설개요]

- ▶ 위 치 :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율곡로 33)
- ▶ 규 모 : 1층 413m², 지하1층 493m²
- ▶ 임차료 : 보증금 6.5억원, 임차료 월 46,200천원
- ▶ 상품판매 위탁수수료 : 매출액의 10%
 - 카드사 수수료, 법인세 등 제외한 8.43% 세입조치



구 분	내 용	평 면 도
지 상 1 층 (413m ²) (125평)	(지역특산물 판매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 • 품목별, 테마별 기획판매, 지역축제 기획전 등 • 제철 및 향토 식음료 홍보 	
지 하 1 층 (493m ²) (149평)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축제, 문화관광 등 지역문화 도서 및 홍보물 전시·홍보 • 식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서로맛남, 금요미식회)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인 '상생상회'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총 226억원 (2021년 92억원→2022년 89억원→2023년 9월 45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자원 체험공간 방문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3년 9월 기준 5,100명 수준임.

○ 상생상회 운영실적

구분		연도별	2021	2022	2023.9	비고
매출	상생상회		1,253	1,710	1,617	제휴기획전, 팜카페 등 포함
	기획판매 (찾아가는 상생상회)		320	376	127	롯데백화점, 솥인숍, SRT매장 등
	온라인		7,638	6,766	2,779	11번가, 네이버 등
	계(백만원)		9,211	8,852	4,523	
방문자 수(명)			107,106	154,908	149,560	

○ 체험전시공간, 지역상생교류사업 추진실적

구분	연도별	2021	2022	2023.9	비고
지역자원 체험 공간 방문객(명)		1,633	2,953	2,592	전시관, 공유공간 대관 및 견학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자(명)		7,624	4,110	2,530	서로맛남, 금요미식회 등 대시민 맛 체험 프로그램
도농 상생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개)		8	4	-	서울 자치구 공동체-지역 시군 공동체 간 농수산물 직거래 등 상생협력 목적의 공동체

다.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 촉진, 지역 간 상생 교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우수특산물 구매·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중소농가에는 판로를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 지역농산물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경험을 축적한 상설매장인 ‘상생상회’를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함께 운영과정에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성 부재와 같은 역기능에 대처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비중이 평균 27.8%에 불과한 바, 과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비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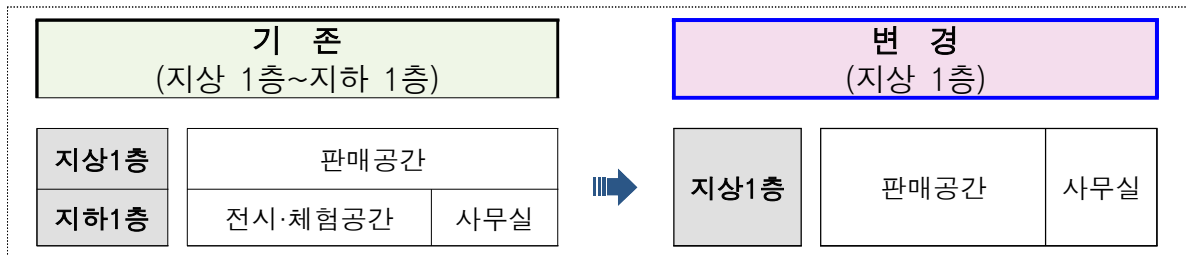
연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23년	753,841	363,360	288,388	1,405,589
'22년	874,711	379,827	464,050	1,718,588
'21년	862,634	379,827	637,750	1,880,211

※ 2024년도 민간위탁금(안)은 1,200,052천원임(사업비 315,479천원, 26.3%)

- 둘째, 감소 추세인 매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농부의 시장, 서울장터 등 관련 직거래 장터와의 연계운영,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의 오프라인 기획판매 확대 등 시민 접점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의 판매역량 강화 및 제품의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온라인 매출 실적이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바(2021년 76억원, 2022년 68억원, 2023년 9월 28억원),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함께, 지명도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셋째, 기존에 전시·체험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상생상회 지하1층 운영을 올해로 종료하고 1층 매장만 운영할 계획인 바, 사업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장을 이전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전시·체험공간(지하 1층) 개편 운영

- 전시·체험공간(지하 1층) 운영종료 및 1층 매장운영으로 임대료 절감



출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21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 이유

- 가.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수·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나. 서울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 촉진 등 지역 간 상생 교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다.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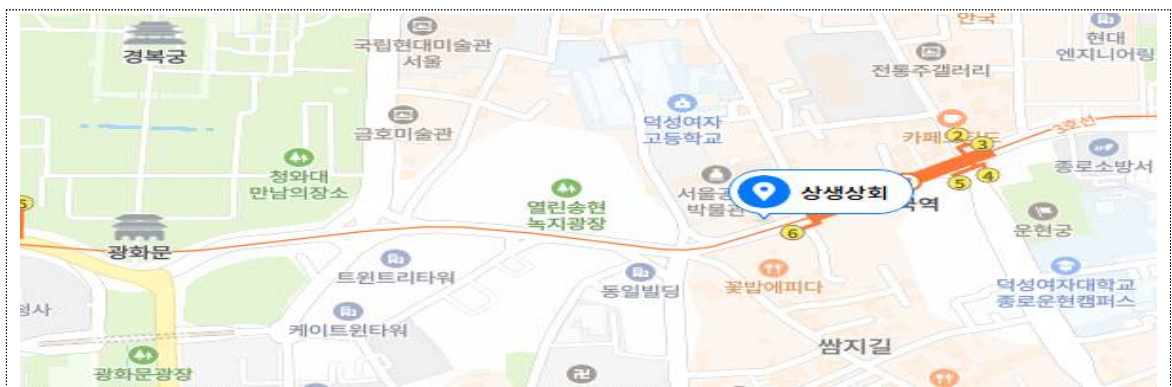
- 지역과의 우호 교류 확대 및 지역 간 상생 교류사업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유연한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사무

- 지역 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지원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 업체 선정·관리 및 운영, 정기 기획전 기획·운영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
- 지역 상생 교류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그 밖에 지역 상생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 개관일자 : '18.11.3.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지상 1층)
- 규모 : 413㎡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4.1.1.~'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 금 1,406백만원('23년 예산)

아. 심의결과 : 적정('23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대외협력과 김현정 (☎ 2133-6672)